

## 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<b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b></p> <p>①·②(생략)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~10.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<b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b></p> <p>①·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~10.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1. Ae클래스 수익증권 :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</u></p>
<p><b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</b>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~10.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②~⑤(생략)</p>	<p><b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</b>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~10.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1. Ae클래스 수익증권</u></p> <p>②~⑤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24조의 2(수익증권의 전환)</b></p> <p>①~④(생략)</p> <p>⑤<u>제4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1.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</p> <p>2.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.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	<p><b>제24조의 2(수익증권의 전환)</b></p> <p>①~④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제&gt;</p>

<p><b>제27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</b></p> <p>①·②(생략)</p> <p>③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<u>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</u>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.</p> <p>④(생략)</p>	<p><b>제27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</b></p> <p>①·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<u>관련세금</u>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.</p> <p>④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40조(보수)</b></p> <p>①·②(생략)</p> <p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~10.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<b>제40조(보수)</b></p> <p>①·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~10.(현행과 같음)</p> <p><b>11. Ae클래스 수익증권</b></p> <p><b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7.5</b></p> <p><b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4.5</b></p> <p><b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</b></p> <p><b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</b></p>
<p><b>제41조(판매수수료)</b>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(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)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<b>1. A클래스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100분의 1</b>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③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</p>	<p><b>제41조(판매수수료)</b>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(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)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A클래스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100분의 1 <b>이내</b></p> <p><b>2. Ae클래스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100분의 0.5 이내</b></p> <p>③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</p>

<p>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. 다만, 제34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,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“<u>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</u>”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④(생략)</p> <p>⑤ 제4항의 후취판매수수료율은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.</p>	<p>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. 다만, 제34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,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“<u>수익증권저축약관</u>”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④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제2항의 선취판매수수료율 및</u> 제4항의 후취판매수수료율은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.</p>
<p><b>제42조(환매수수료)</b></p> <p>① <u>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u></p> <p>② <u>환매수수료는 ‘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. 이하 본 항에서 ‘이익금’이라 한다)’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u></p> <p>1. 3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</p> <p>2. 30일 이상 90일 미만 : 이익금의 30%</p> <p>③ <u>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“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”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.</u></p>	<p><b>제42조(환매수수료)</b></p> <p><u>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</u></p>
<p><b>제44조(신탁계약의 변경)</b></p> <p>①~④(생략)</p> <p>⑤ <u>수익자가 신탁계약의 변경에 대하여 이의</u></p>	<p><b>제44조(신탁계약의 변경)</b></p> <p>①~④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제&gt;</p>

<p><u>신청기간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 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u></p>	
<p><b>제46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/b>  ①~③(생략)  ④ <u>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u>  ⑤(생략)</p>	<p><b>제46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/b>  ①~③(현행과 같음)  &lt;삭제&gt;  ④(호변 변경)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<u>부칙</u> 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